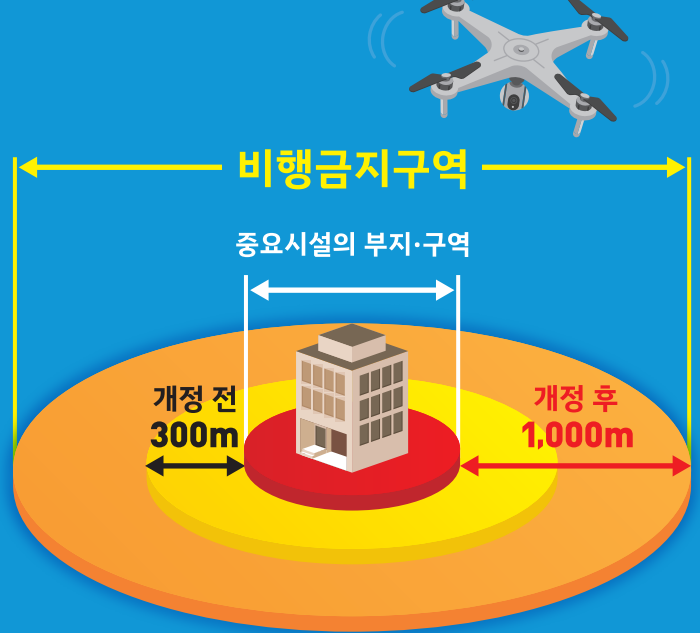


# 드론 등의 비행금지구역이 1,000m로 확대됩니다

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을  
비행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 
사전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



위반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

##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 개정에 따라 규제가 강화됩니다

### 비행금지구역 확대

중요시설 부지 등의 주변 '약  
300m'였던 비행금지구역이 '약  
1,000m'로 확대됩니다.

### 처벌 규정 신설

중요시설 '부지 등' 상공 비행에  
대한 기존 처벌 규정에 더해, '부지  
등' 이외의 비행금지구역 상공  
비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 
신설됩니다.

신설

'부지 등' 상공 비행

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

'부지 등' 이외의 비행금지구역

상공 비행

6개월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

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 
웹사이트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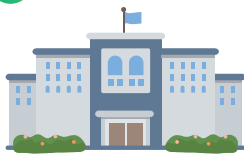


### 중요시설이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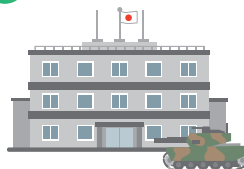
① 국가의 중요시설 등  
(국회의사당, 총리관저,  
최고재판소, 왕궁 등)



② 외국 공관 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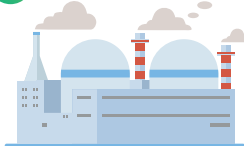
③ 방위 관련 시설



④ 공항



⑤ 원자력 시설



※ ④ 및 ⑤에는 국내 주요 인사가  
참석하는 행사장이나 외국 주요  
인사가 참가하는 국제회의의 준비·  
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회의장 시설  
등, 일시적으로 지정되는 시설이  
포함됩니다.

### 비행금지 예외 사항

① 중요시설 관리자 또는 그 동의를  
받은 자에 의한 비행금지구역  
상공 비행  
(예)측량 또는 인프라 점검, 취재·보도를 위한  
항공촬영 등

② 토지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그  
동의를 받은 자에 의한 해당  
토지 상공비행  
(예)소유·점유 중인 농지에서의 농약 살포, 자택  
정원에서의 드론 조종 연습 등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 
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 
비행금지구역 상공 비행  
(예)재난 대응 업무 등

사전 신고 절차의  
자세한 내용



상기 ①~③의 비행금지 예외  
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 
경찰 등에 대한 사전 신고  
(원칙적으로 비행 시작 48  
시간 전)가 필요합니다.

### 규제 대상이 되는 드론 등이란

#### 소형 무인기

(중량 100g 미만 기체 포함)

- 드론
- RC 비행기
- 농약 살포용 헬리콥터  
등



#### 특정 항공용 기기

- 기구
- 패러글라이더
- 행글라이더
- 분사식 부유 기구  
등



'항공법'에 따른 무인항공기  
(중량 100g 이상 기체)에 관한  
규제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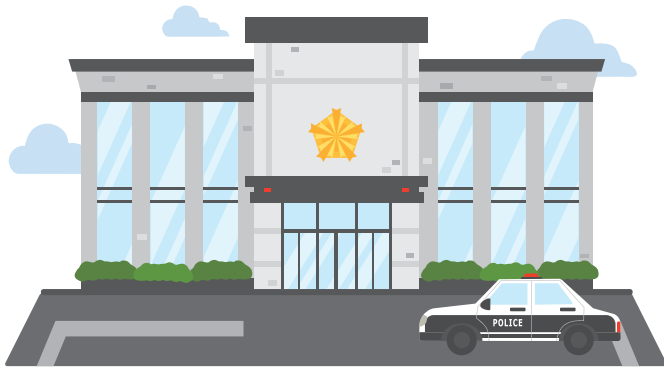


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을 비행하는 경우※에는,  
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에 따라 **도도부현 공안위원회  
(경찰) 등에 사전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**

※비행금지 예외 사항 ①~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**사전 신고는 원칙적으로 비행 시작 48시간 전까지**  
(재난, 기타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행 직전까지) 해야 합니다.

### 모든 비행금지구역



###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(경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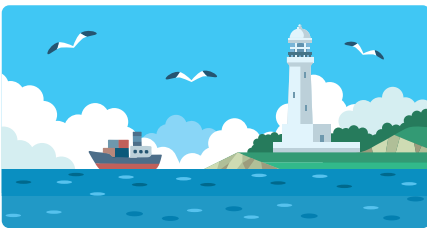
비행금지구역을 관할하는  
경찰서를 통해 도도부현  
공안위원회에 신고해야  
합니다. 경찰서 창구  
외에도 **e-Gov 전자신청  
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 
신고**가 가능합니다.

e-Gov  
전자신청 서비스



도도부현 공안위원회(경찰)에 사전 신고 외에도, 다음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 
**관계 기관에 사전 신고도 필요합니다**

### 해역을 포함한 비행금지구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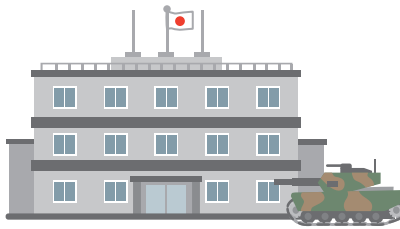


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 
관구 해상보안본부장에게  
**사전 신고가  
필요합니다.**

해상보안청  
(일본어 전용  
페이지)



### 방위 관련 시설 주변 비행금지구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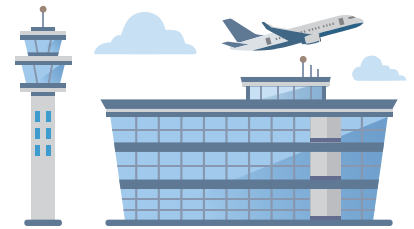


해당 방위 관련 시설의  
시설관리자에게  
**사전 신고가  
필요합니다.**

방위성



### 공항 주변 비행금지구역



해당 공항의  
시설관리자에게  
**사전 신고가  
필요합니다.**

국토교통성  
(일본어 전용  
페이지)



## 대상 시설관리자 등의 동의 취득 절차

비행금지 예외 사항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중, 중요시설 관리자 또는 토지 소유자·점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 
경우에는 경찰 등에 사전 신고 시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동의 취득 절차에 대해서는 각 시설 관리자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